

I.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개요

1. 비과세·감면 총괄표

(단위: 원, %)

구 분		'19년(결산)
비과세·감면액(A)		1,469,716,668,559
	비과세	545,739,395,489
	감면	923,977,273,070
지방세 징수액(B)		20,458,072,754,695
비과세·감면율(A/A+B)		6.7

2. 기능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원, %)

분 야		'19년(결산)	비중
총 계		1,469,716,668,559	100.0
1	일반공공행정	334,806,874,990	22.8
2	공공질서 및 안전	6,325,691,079	0.4
3	교육	119,852,645,663	8.2
4	문화 및 관광	56,748,383,043	3.9
5	환경보호	14,098,913,180	1.0
6	사회복지	258,091,853,449	17.6
7	보건	5,217,984,080	0.4
8	농림해양수산	1,695,531,816	0.1
9	산업·중소기업	190,744,181,457	13.0
10	수송 및 교통	73,435,385,939	5.0
11	국토 및 지역개발	178,300,713,061	12.1
12	과학기술	5,841,056	0.0
13	국가	138,601,319,077	9.4
14	외국	3,700,868,743	0.3
15	기타	88,090,481,926	6.0

3. 세목별 비과세 · 감면 현황

(단위: 원, %)

분 야		'19년(결산)	비중
총 계		1,469,716,668,559	100.0
	보통세	1,447,592,110,106	98.5
	취득세	839,565,754,300	57.1
	주민세	75,801,932,350	5.2
	지방소득세	0	0.0
	재산세(도시지역분)	501,343,325,736	34.1
	자동차세	30,881,097,720	2.1
	목적세	22,124,558,453	1.5
	지역자원시설세	22,124,558,453	1.5

4. 비과세 · 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

(단위: 원)

감 면 유 형	'18년(결산)	'19년(결산)	증감액
정당에 대한 비과세	70,977,540	72,992,984	2,015,444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255,320,746,365	293,963,015,102	38,642,268,737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10,585,630,320	10,325,422,830	-260,207,490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733,625,718	881,112,700	147,486,982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68,740,931	68,342,557	-398,374
사유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에 대한 비과세	12,177,591,929	14,191,921,948	2,014,330,019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27,859,637,941	15,304,066,869	-12,555,571,072
갯생보호사업을 위한 감면	5,613,022	380,105,055	374,492,033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6,158,383,813	5,945,586,024	-212,797,789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례	1,438,987,891	607,900,060	-831,087,831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2,281,988,264	3,174,222,777	892,234,513
교육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0	543,027	543,027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102,000,957,101	111,298,966,043	9,298,008,942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249,180	11,780	-237,400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5,398,313,007	4,771,001,976	-627,311,031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44,848,264,303	49,258,895,619	4,410,631,316
종교,제사단체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204,680	0	-204,680
신문,통신사업에 대한 감면	1,722,873,885	1,959,242,755	236,368,870
문화 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4,026,531,162	2,546,727,968	-1,479,803,194
체육진흥을 위한 감면	3,000,332,213	1,863,167,260	-1,137,164,953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789,648,266	1,120,349,441	330,701,175
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15,655,001,230	14,098,913,180	-1,556,088,050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과세	720,619,200	1,009,617,600	288,998,400
장애인에 대한 감면	25,638,489,334	24,160,082,446	-1,478,406,888
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	17,493,366	17,755,866	262,500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11,896,930,657	9,473,667,450	-2,423,263,207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1,039,247,819	2,463,917,753	1,424,669,934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142,891,120	0	-142,891,12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8,159,960,252	8,331,152,348	171,192,09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588,652,963	258,406,659	-330,246,304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4,273,591,450	1,846,219,390	-2,427,372,060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195,810,908,711	204,981,081,633	9,170,172,922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758,847	1,003,024,187	1,002,265,340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과세	4,294,197,881	4,324,618,127	30,420,246
권익증진을 위한 감면	214,949,389	222,309,990	7,360,601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421,280,403	4,119,131,316	3,697,850,913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1,093,043,202	918,039,227	-175,003,975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감면	31,919,824	180,813,537	148,893,713
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133,267,440	177,726,500	44,459,060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2,937	3,063	126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214,903,090	391,213,760	176,310,670
산림유전자원보호법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362,558,937	391,393,683	28,834,746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1,079,651,760	735,194,810	-344,456,950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6,261,835,778	2,861,405,442	-3,400,430,336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55,991,480	453,931,310	397,939,830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95,905,951,960	23,697,444,360	-72,208,507,600
명목회사에 대한 감면	1,227,036,590	0	-1,227,036,590
산업기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156,539,558	1,124,259,110	967,719,552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1,724,448,310	1,298,040,920	-426,407,390
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	34,199,520,880	24,841,746,600	-9,357,774,280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2,996,459,128	1,558,997,324	-1,437,461,804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0	18,365,440	18,365,440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141,838,927,203	134,889,990,951	-6,948,936,252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48,427,280,902	9,200,387,037	-39,226,893,865
해운 항만 등 지원을 위한 감면	232,038	226,772	-5,266
항공운송사업 등 지원을 위한 감면	8,021,001,840	6,463,951,560	-1,557,050,280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13,212,392,600	11,025,375,850	-2,187,016,750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33,976,620,900	34,776,013,070	799,392,170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27,959,770	13,230,960	-14,728,810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11,609,505,290	11,956,200,690	346,695,400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7,190,441,480	7,049,192,600	-141,248,880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72,430,930	93,200,760	20,769,8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95,055,883,020	151,621,477,690	56,565,594,670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7,235,421,383	4,884,414,515	-2,351,006,868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50,529,876,150	10,482,981,030	-40,046,895,12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4,117,740,388	4,169,446,466	51,706,078
과학기술 지원을 위한 감면	5,567,836	5,841,056	273,220
국가에 대한 비과세	131,869,401,104	133,453,156,736	1,583,755,632
국가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2,663,093,580	2,716,900,390	53,806,810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2,265,951,318	2,431,261,951	165,310,633
외국정부 등에 대한 비과세	1,800,169,789	3,312,522,434	1,512,352,645
주한외국원조단체에 대한 비과세	9,316,920	8,920,709	-396,211
외국정부기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과세	161,783,200	379,425,600	217,642,400
신탁재산에 대한 비과세	2,292,208,950	3,122,836,210	830,627,260
환매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164,248,200	938,352,200	774,104,000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41,568,185,240	47,622,544,230	6,054,358,990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57,427,549,310	25,179,763,720	-32,247,785,590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8,136,048,520	8,326,993,522	190,945,002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14,565,607	15,685,976	1,120,369
시설물에 대한 공동시설세 비과세	799,189,412	748,095,621	-51,093,791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17,112,816	72,046,398	54,933,582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2,569,728,830	1,708,498,020	-861,230,810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15,366,800	16,892,239	1,525,439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302,699,140	338,773,790	36,074,650

II.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

1. 일반공공행정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일반공공행정		합 계	334,806,874,990
1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자동차·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경호, 경비, 교통순찰, 소방, 환자수송, 청소, 오물수거와 도로공사 등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1·2호)	소 계	293,963,015,102
		취 득 세	36,580,876,580
		주 민 세	12,667,900,061
		재 산 세	236,851,640,405
		자 동 차 세	216,246,819
		지 역 자 원 시 설 세	7,646,351,237
		-	
2	지방자치단체 등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	소 계	10,325,422,830
		취 득 세	10,325,422,83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p>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②)</p> <p>-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73의2①)</p>	-	
3	<p>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p> <p>-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비과세(지방세법 §109②, §145②)</p>	소 계	881,112,700
		재산세	790,687,010
		지역자원시설세	90,425,690
		-	
4	<p>정당에 대한 비과세</p> <p>- 정당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9①·②·③)</p>	소 계	72,992,984
		주민세	64,315,920
		재산세	7,119,586
		지역자원시설세	1,557,478
5	<p>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p> <p>-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90①, §90②)</p>	소 계	68,342,557
		재산세	66,655,850
		지역자원시설세	1,686,707
6	<p>사유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비과세</p> <p>- 묘지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 비과세(지방세법 §26② 3호)</p> <p>-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1호, §145②)</p>	소 계	14,191,921,948
		재산세	13,813,152,331
		지역자원시설세	378,769,617
		-	
7	<p>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p> <p>- 지방공사·공단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①②)</p> <p>-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및 출연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재단 법인에 대한 취득·재산·등록면허세 감면(50%)(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③)</p> <p>-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고유업무 부동산 취득세 감면(50%) (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④)</p>	소 계	15,304,066,869
		취득세	5,359,077,150
		재산세	9,944,989,719
		-	

2. 공공질서 및 안전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공공질서 및 안전		합 계	6,325,691,079
8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감면 - 한국갱생보호공단 등의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5①)	소 계	380,105,055
		취 득 세	374,412,780
		재 산 세	5,692,275
		-	
9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개수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레저·주민·재산·자동차·지방소득·담배소비·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④, §92① 1호, §92②·③) - 소멸 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상속 취득(지방세법 §9⑦)	소 계	5,945,586,024
		취 득 세	15,969,240
		재 산 세	2,673,854
		자동차세	5,926,874,869
		지역자원시설세	68,061
		-	

3. 교육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교 육		합 계	119,852,645,663
10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소 계	3,174,222,777
		취 득 세	959,479,420
		주 민 세	2,049,845,710
		재 산 세	122,784,666
		지역자원시설세	42,112,981
11	교육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 계	543,027
		재 산 세	543,027
		-	
12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	소 계	111,298,966,043
		취 득 세	21,599,811,82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1①, §41②, §41③, §41⑤) - 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 및 학생들의 실험·실습용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선박에 대하여 취득·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2①, §42②) -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1⑥)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 대한 취득·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1⑦) -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9)	주 민 세	35,690,351,030
		재 산 세	48,545,645,443
		지역자원시설세	5,463,157,750
		-	
13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게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 제공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1④)	소 계	11,780
		지역자원시설세	11,780
		-	
14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43①, §43②, §43③, §44)	소 계	607,900,060
		취 득 세	605,908,460
		주 민 세	1,991,600
		-	
15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5①) - 장학법인의 장학금 지급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5②) - 기초과학연구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5의2)	소 계	4,771,001,976
		취 득 세	1,692,090,540
		재 산 세	2,807,933,398
		지역자원시설세	270,978,038
		-	

4. 문화 및 관광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문화 및 관광		합 계	56,748,383,043
16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감면	소 계	49,258,895,619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0①, §50②, §50③, §50⑤, §50⑥) - 종교재단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38④) 	취 득 세	16,155,910,280
		주 민 세	2,772,158,254
		재 산 세	26,679,676,635
		지역자원시설세	3,651,150,450
17	신문·통신사업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통신사업소에 대하여 주민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1) 	소 계	1,959,242,755
		주 민 세	1,959,242,755
		-	
18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인·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예술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①) - 도서관의 취득세는 경감, 도서관의 등기·등록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는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②) -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4조의2) - (서울 종로구) 인사동·대학로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재산 감면 - (서울) 공연장에 대한 취득·등록·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소 계	2,546,727,968
		취 득 세	726,800,140
		재 산 세	1,702,900,305
		지역자원시설세	117,027,523
		-	
19	체육진흥을 위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인·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진흥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①) 	소 계	1,863,167,260
		재 산 세	1,863,167,260
		-	
20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3)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5①)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5②) 	소 계	1,120,349,441
		재 산 세	1,120,345,613
		지역자원시설세	3,828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보,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등 재산 면제(조례) - (서울 종로)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에 대한 재산세 저율과세 - (서울 성북) 등록 한옥 주택 건축물 및 부속토지 감면 -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내 부동산에 대한 감면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감면 		

5. 환경보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환경보호		합 계	14,098,913,180
21	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건축물 인증 등급,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른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5~15%를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2①) -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 15~20%를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2②) -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 취득세 10%를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2③) -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 취득·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4①) 	소 계	14,098,913,180
		취 득 세	14,098,913,180
		-	

6. 사회복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사회복지		합 계	258,091,853,449
2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주민세(균등분) 비과세(지방세법 §77②) - 지방세법 77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 계	1,009,617,600
		주 민 세	1,009,617,600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23	장애인에 대한 감면 -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 1~3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7①) - 시각장애(4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조례)	소 계	24,160,082,446
		취 득 세	10,546,235,370
		자동차세	13,613,847,076
		-	
24	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 -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주택, 축사용 부동산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7의2①) - 한센인 소유의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7의2②)	소 계	17,755,866
		재 산 세	17,747,966
		지역자원시설세	7,900
		-	
25	사회복지법인·시설·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 사회복지법인,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2①, §22②, §22③, §22⑤) - 사회적기업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4)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22⑥)	소 계	4,324,618,127
		취 득 세	841,755,700
		주 민 세	1,427,577,431
		재 산 세	1,849,761,064
		지역자원시설세	205,523,932
		-	
26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9) -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2①, §22의2②)	소 계	9,473,667,450
		취 득 세	6,745,548,210
		재 산 세	2,728,119,240
		-	
27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노인복지시설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 1호) - 경로당용 부동산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0 1호) - 양로시설, 경로당 외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 2호)	소 계	2,463,917,753
		취 득 세	2,442,272,900
		재 산 세	18,244,823
		지역자원시설세	3,400,030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28	권익증진을 위한 감면 -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0의3 1호) -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사업 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0의3 2호) - 법률구조법인·한국소비자원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3①,②)	소 계	222,309,990
		취 득 세	849,790
		재 산 세	221,460,200
		-	
29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①) -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②, §29③) - 국가유공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의 취득·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④)	소 계	8,331,152,348
		취 득 세	4,679,001,070
		주 민 세	12,413,330
		재 산 세	85,853,152
		자동차세	3,547,065,671
		지역자원시설세	6,819,125
3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를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30①) - 보훈병원 의료업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7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0②) - 독립기념관의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주민·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0③)	소 계	258,406,659
		재 산 세	258,406,659
		-	
31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 서민주택(40㎡이하·취득가액 1억원미만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3②)	소 계	1,846,219,390
		취 득 세	1,846,219,390
		-	
32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①·③)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	소 계	204,981,081,633
		취 득 세	173,883,314,980
		재 산 세	31,097,766,653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p>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직접사용할 경우 재산·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4)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목적으로 취득 소유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2①) 	-	
33	<p>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 등을 위한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6) -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으로써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36의2) 	소 계	1,003,024,187
		취 득 세	1,002,291,230
		재 산 세	732,957
		-	

7. 보건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보건		합 계	5,217,984,080
34	<p>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과세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37) 	소 계	4,119,131,316
		취 득 세	3,593,653,510
		재 산 세	525,477,806
		-	
35	<p>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업을 개설한 자가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면허,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가 취득하는 면허 등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38①) -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재산세 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38③) 	소 계	918,039,227
		취 득 세	267,013,460
		재 산 세	651,025,767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36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감면 - 인구보건복지협회·한국건강관리협회·대한결핵협회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0)	소 계	180,813,537
		취 득 세	148,118,680
		재 산 세	32,694,857

8. 농림해양수산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농림해양수산		합 계	1,695,531,816
37	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 자경농민의 농지·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①, ②) - 도로·하천점용 면허 등의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③) -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 조성용 임야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④) - 농기계류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 - 농업진흥지역 등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②) - 농어업인이 영농,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원분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0②) -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조특법 §106의2① 1호)	소 계	177,726,500
		취 득 세	177,622,390
		주 민 세	104,110
		-	-
		-	-
38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지매매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호)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의2호) - 경영회생 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환매취득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2호) - 영농 규모 확대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3호)	소 계	3,063
		재 산 세	3,063
		-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자 공급목적의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3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4호) -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 등을 위해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5호) -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3③) 		
39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법인이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1①) -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11②) - 농업법인의 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1④) 	소 계	391,213,760
		취 득 세	391,213,760
		-	
40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③ 2호) 	소 계	391,393,683
		재 산 세	391,386,053
		지역자원시설세	7,630
41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의 구관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4①) -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에 대하여 주민세 50% 감면,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4③, §14④) 	소 계	735,194,810
		취 득 세	735,194,810
		-	

9. 산업·중소기업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산업·중소기업		합 계	190,744,181,457
42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해당사업을 위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 4년간 7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①·③) -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용하기 위해 	소 계	2,861,405,442
		취 득 세	2,827,895,130
		재 산 세	33,510,312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p>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3년간 재산세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0③ 1호)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등이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 재산세 10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0③ 1의2호)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2년간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조특법 §119②, §120③, §121)(삭제) 	-	
43	<p>산업기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협력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2③) -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의 고유 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5①) 	소 계	1,124,259,110
		취 득 세	1,009,081,960
		재 산 세	115,177,150
		-	
44	<p>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견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3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6) - 시험분석·연구용 담배, 수출상당 견본용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54① 6·7호) - (광주, 광주북구) 한국광기술원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 	소 계	1,298,040,920
		취 득 세	1,298,040,920
		-	
45	<p>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등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8②) - 제00조(일자리창출을 위한 감면) ① 201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제주특별자치도내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내 사업장에서 2019년7월13일 이후 「지방세법」 제74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최초 감면 적용연도부터 3년간 지방세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감한다. 	소 계	18,365,440
		취 득 세	18,365,440
		-	
46	<p>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①) - 벤처기업집적시설·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취득·등록 	소 계	24,841,746,600
		취 득 세	24,841,746,600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p>면허·재산세 중과 배제(지방세특례제한법 §58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건축물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 경감하고 3년간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③)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재산세 3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④) - 지식산업센터를 직접사용, 분양 또는 임대목적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35%, 재산세 3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2 ①) -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의 사업시설용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3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2 ②)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제0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자동차산업·조선산업 분야 제조업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제2항 - (서울·경기) 도시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세 50% 감면, 5년간 재산세 50% 감면 -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제주·경기평택·강원·충북·전북·경북·경남) 고용창출기업(고용우수)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50% 감면 		
47	<p>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83①) - 시장정비사업시행에 따라 최초로 취득한 부동산(주택 제외)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83②) -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면제(조례) - (서울 자치구)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 5년간 재산세 50% 감면 	소 계	1,558,997,324
		취 득 세	1,534,695,020
		재 산 세	13,735,480
		지역자원시설세	10,566,824
		-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48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 자동차·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8①) - 무역업자의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는 취득세 1,000분의 20을 경감, 중고자동차는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8③)	소 계	134,889,990,951
		취 득 세	130,134,350,920
		자동차세	4,755,640,031
		-	
49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협협동조합 간의 합병으로 양수 받은 재산의 취득세 면제,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②) - 금융기관의 기업합병·분할 등을 위한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①, §57의2⑤ 1·2·4·5·6·7·8호)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라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⑥) -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이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의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3①1·2·3·4호)	소 계	453,931,310
		취 득 세	453,931,310
		-	
		-	
50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③ 2~5호, §57의2⑤ 3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④)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현물출자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받아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⑥ 3호)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소 계	23,697,444,360
		취 득 세	23,697,444,360
		-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하고 중소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로 취득하여 임대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3②,③,④)		

10. 수송 및 교통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수송 및 교통		합 계	73,435,385,939
51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시설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2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3①) -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차량,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②) -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역사 개발사업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등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3③) -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확정·분할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 분할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④)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63⑤)	소 계	9,200,387,037
		취 득 세	5,012,218,220
		재 산 세	4,188,168,817
		-	
52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국제선박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4①) - 화물운송용·외항여객운송용·원양어업용 선박에 대해 취득세 1% 세율 및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4②) -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용 선박 중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취득세 2% 세율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64③) -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시행령 §137①) - 연안 운항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 자동차세 면제(조특법 §106의2① 2호) - (부산·경남, 부산 00구) 부산항만공사의 사업용 부동산 등 취	소 계	226,772
		지역자원시설세	226,772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50% 감면 - (인천, 인천 00구) 인천항만공사의 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등록면허·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 (울산, 울산 00구) 울산항만공사의 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50% 감면 - (전남, 광양) 광양시 컨테이너항 배후지안에 입주자의 항만관련 시설용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53	항공운송사업 등 지원을 위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등 취득세 12% 세율 경감,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5) -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50% 감면 	소 계	6,463,951,560
		취 득 세	6,463,951,560
		-	
54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형 승용·승합·화물차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7①·②) 	소 계	11,025,375,850
		취 득 세	11,025,375,850
		-	
55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면제(취득세액 140만원 한도) 및 공제(140만원초과 시 140만원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③) - 전기자동차 2018.12.31.까지는 200만원 한도로 2019.12.31까지는 14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6④) 	소 계	34,776,013,070
		취 득 세	34,776,013,070
		-	
56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및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 취득세 2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9) 	소 계	13,230,960
		취 득 세	13,230,960
57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0①)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자가 천연가스버스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0③) 	소 계	11,956,200,690
		취 득 세	11,956,200,690
		-	

11. 국토 및 지역개발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국토 및 지역개발		합 계	178,300,713,061
58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사업 등에 따라 부동산이 매수·수용·철거된 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73) 	소 계	7,049,192,600
		취 득 세	7,049,192,60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①)	-	
59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및 보류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4①)	소 계	93,200,760
		취 득 세	93,200,760
		-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74①) -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4③ 1~3호) - 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85㎡ 이하 주택의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74③4~5호)	소 계	151,621,477,690
		취 득 세	151,621,477,690
		-	
61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3자 공급용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20% 감면, 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6①·②)	소 계	4,884,414,515
		취 득 세	2,546,612,860
		재 산 세	2,337,801,655
62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 산업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35% 감면, 조성공사 중 토지 재산세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①) -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조성 후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②) -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조성 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③) - 산업단지, 유지지역,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35% 경감, 대수선 취득세 25%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8④) - 한국산업단지공단인 분양·임대 및 매각 사업, 후생복지·교육사업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35%, 재산세 50% 경감	소 계	10,482,981,030
		취 득 세	10,482,981,030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수도권의 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8⑥) - 산업단지 내 개축·대수선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면제(조례) - 농공단지 내 휴·폐업 공장에 대체입주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조례)		
6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84①) - 공공시설용 토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②) - 철도보호지구 내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③)	소 계	4,169,446,466
		재 산 세	4,169,446,466
		-	

12. 과학기술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과학기술		합 계	5,841,056
64	과학기술 지원을 위한 감면 -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44의2)	소 계	5,841,056
		지역자원시설세	5,841,056
		-	

13. 국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국 가		합 계	138,601,319,077
65	국가에 대한 비과세	소 계	133,453,156,736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세·지역자원시설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45① 1호) - 국가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 환자수송·청소·오물수거와 도로공사, 우편·전파관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취 득 세	8,302,005,350
		주 민 세	17,595,630,759
		재 산 세	103,704,998,825
		자동차세	550,425,654
		지역자원시설세	3,300,096,148
66	국가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②) 	소 계	2,716,900,390
		취 득 세	2,716,900,390
67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 계	2,431,261,951
		재 산 세	2,324,770,397
		지역자원시설세	106,491,554

14. 외국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외 국		합 계	3,700,868,743
68	외국정부 등에 대한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지방소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2호, §90, §109①, §145②) - 주한외교기관, 국제연합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3호) 	소 계	3,312,522,434
		취 득 세	1,206,828,520
		주 민 세	23,447,290
		재 산 세	2,019,787,909
		자동차세	5,122,659
		지역자원시설세	57,336,056
69	주한외국원조단체에 대한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외국원조단체에 대한 주민·자동차·지방소득세 비과세(지방세법 §77① 2호, §90, §126 3호) 	소 계	8,920,709
		자동차세	8,920,709
		-	
70	외국정부기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정부기관 또는 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할 비과세(지방세법 §77① 2호) 	소 계	379,425,600
		주 민 세	379,425,60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주민세 균등분 비과세(지방세법 §77③ 2호)	-	

15. 기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기 타		합 계	88,090,481,926
71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 임시 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⑤, §109③ 3호, §109③ 5호, §145②) -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③ 5호)	소 계	15,685,976
		재 산 세	6,599,925
		지역자원시설세	9,086,051
		-	
72	신탁재산 등에 대한 비과세 - 신탁재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③ 1,2,3호) - 9억원이하 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⑥)	소 계	3,122,836,210
		취 득 세	3,122,836,210
		-	
73	환매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④, §15① 1호, 지방세특례제한법§73③)	소 계	938,352,200
		취 득 세	938,352,200
		-	
74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 1가구 1주택 및 자경농민이 상속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15① 2호)	소 계	47,622,544,230
		취 득 세	47,622,544,230
		-	
75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한 감면 -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15① 3·4호) -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1호)	소 계	25,179,763,720
		취 득 세	25,179,763,720
		-	
76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소 계	8,326,993,522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5 ① 6호) -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한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의 등기·등록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2호) -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분할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④) -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66②) -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2.4호) -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매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1년 이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폐차된 자동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받는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종전가액 상당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①) 	취 득 세	6,117,041,040
		자동차세	2,209,952,482
		-	-
77	시설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에 대한 공동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시행령 §137①) 	소 계	748,095,621
		지역자원시설세	748,095,621
		-	-
78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 1천분의 2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2①) - 별정우체국에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주민·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2②) 	소 계	72,046,398
		주 민 세	71,995,500
		재 산 세	50,898
		-	-
79	신협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협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신용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1호, §87② 1호) - 신협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가 복지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조합원의 교육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 계	1,708,498,020
		취 득 세	1,708,498,020
		-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2호, §87② 2호)		
80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 새마을운동조직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88①)	소 계	16,892,239
		재 산 세	16,892,239
		-	
81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92의2)	소 계	338,773,790
		주 민 세	75,915,400
		재 산 세	202,256,970
		자동차세	47,001,750
		지역자원시설세	13,599,670

